

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7월 일

발의자 : 정혜영 의원

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자치법」 등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와 정부의 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’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고, 법령 인용 및 조문 형식을 명확하게 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법령의 표현을 알기 쉽게 바꾸기 위해 ‘~의 규정에 의하여’, ‘~에 의한’과 같은 표현을 ‘~에 따라’, ‘~에 따른’으로 순화함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5조).
- 나. 어려운 한자어 ‘기타(其他)’를 쉬운 우리말 표현인 ‘그 밖에’로 변경하고, 어색한 표현인 ‘범위 안’을 ‘범위’로 간결하게 수정함(안 제2조, 제5조).
- 다. 어법에 맞지 않는 띄어쓰기를 바로잡고, 인용하는 자치법규의 명칭에 낫표(「 」)를 사용하여 다른 규정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: 해당없음

5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·제54조·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·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제5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56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5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56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49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”를 “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”로, “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”을 “필요한 사항은 「하남시의회 회의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제5조(정례회 심의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제5조(정례회 심의) ① -----

----- 그 밖
에 -----
-----.

② ----- 법 제49
조제1항에 따른 -----

-----.

제6조(준용) -- 조례에서 규정한
사항 이외-----
----- 필요한 사항은
「하남시의회 회의규칙」--.